



#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경영책임자의 역할



## 순서

- I 산재사망사고 현황
- II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현황
- III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경영책임자의 역할



# I . 산재사망사고 현황



# 1. 산재사망사고 발생 현황



'22년 사망사고 총 611건, 644명 사망 (12.31. 기준)  
**건설업 341명 (52.9%), 50억이상 115명**

| 업종   | 규모       | 사망사고건수(건, %) |      |           | 사고사망자수(명, %) |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| '21년         | '22년 | 증감(율)     | '21년         | '22년 | 증감(율)    |
| 전체업종 | 전체       | 665          | 611  | △54(8.1)  | 683          | 644  | △39(5.7) |
|      | 50인(억)이상 | 234          | 230  | △4(1.7)   | 248          | 256  | +8(3.2)  |
| 건설업  | 전체       | 353          | 328  | △25(7.1)  | 359          | 341  | △18(5.0) |
|      | 50억이상    | 110          | 104  | △6(5.5)   | 115          | 115  | 0(0.0)   |
| 제조업  | 전체       | 169          | 163  | △6(3.6)   | 179          | 171  | △8(4.5)  |
|      | 50인이상    | 76           | 81   | +5(6.6)   | 84           | 89   | +5(6.0)  |
| 기타업종 | 전체       | 143          | 120  | △23(16.1) | 145          | 132  | △13(9.0) |
|      | 50인이상    | 48           | 45   | △3(6.3)   | 49           | 52   | +3(6.1)  |

# 1. 산재사망사고 발생 현황



'22년 전체 사망사고 611건 중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 
 떨어짐(262건, 42.9%), 끼임(90건)  
 건설현장 341명중 251명(추락,끼임,부딪힘 73.6%)



'22년 사망사고 유형 ('22.12.31.)

|                 | 사망사고건수(건, %) |      |           | 사고사망자수(명, %) |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'21년         | '22년 | 증감(율)     | '21년         | '22년 | 증감(율)     |
| 전체              | 665          | 611  | △54(8.1)  | 683          | 644  | △39(5.7)  |
| 떨어짐             | 313          | 262  | △51(16.3) | 315          | 268  | △47(14.9) |
| 끼임              | 99           | 90   | △9(9.1)   | 99           | 90   | △9(9.1)   |
| 부딪힘             | 49           | 63   | +14(28.6) | 49           | 63   | +14(28.6) |
| 칼람·뒤집힘          | 48           | 44   | △4(8.3)   | 51           | 44   | △7(13.7)  |
| 물체에 맞음          | 49           | 48   | △1(2.0)   | 49           | 49   | 0(0.0)    |
| 기타(붕괴, 화재, 질식등) | 107          | 104  | △3(2.8)   | 120          | 130  | +10(8.3)  |

## 2. 서울지역 중대재해 현황



###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('23.7.27. 기준)

| 구분          | 조사통계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'22.7.27. | '23.7.27. | 증감(율)            |
| 전 체         | 366명      | 331명      | △35(9.6)         |
| 서울청 관내 소계   | 20        | 24        | +4(20.0)         |
| 서울청         | 5         | 3         | △2(40.0)         |
| <b>서울강남</b> | <b>2</b>  | <b>5</b>  | <b>+3(150.0)</b> |
| 서울동부        | 3         | 2         | △1(33.3)         |
| 서울서부        | 3         | 4         | +1(33.3)         |
| 서울남부        | 1         | 2         | +1(100.0)        |
| 서울북부        | 4         | 5         | +1(25.0)         |
| 서울관악        | 2         | 3         | +1(50.0)         |

## 2. 서울지역 중대재해 현황



### □ 서울강남지청(강남구) 관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 (22년~23년.7월)

| 구분        | 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--------|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|
| 22년       | 6 | 1  | -  | -  | -  | -  | 1  | -  | -  | 3  | 1   | -   | -   |
| 23년<br>7월 | 5 | 1  |    |    |    | 1  | 3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  |

- 23년 5월 및 6월에 건설현장 중대재해 집중 발생(4건, 그 중 토요일 작업중 2건)  
- 22년의 경우 9월에 건설현장 중대재해 빈발



## Ⅱ.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현황

중대산업재해 총 253건

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91건

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160건

기소의견 송치 50건    검찰 기소 14건

개인질병, 교통사고, 자살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내사종결 (402 여건)

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('22.1.27) 후 중대법 1·2호 판결\*

\* <1호>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(형 확정), 건설

<2호>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(법정구속, 2심 진행 예정), 제조

#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

| 구분             | 산업안전보건법 (중대재해)  | 중대재해처벌법 (중대산업재해)  |
|----------------|---|---|
| 의무주체           | 사업주(법인,개인사업주)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| 사업주(법인,기관) 및 경영책임자 등  |
| 보호대상           | 근로자, 수급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<br>( <b>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</b> )  | 근로자, 노무제공자, <b>수급인</b> ,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<br>( <b>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, 중대산업재해 예방</b> )   |
| 적용범위           | 전 사업장 적용  |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<br>(50인 미만 사업장·50억 미만 건설공사 24.1.27.시행)  |
| 재해정의           | ① 사망자 1명 이상<br>②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<br>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 | ① 사망자 1명 이상<br>②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동시 2명 이상<br>③ 동일 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<b>직업성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(열사병 등 24 질병)</b><br>↳ <b>은열질환 산업재해 3건이상 (중처법 적용 대상)</b>            |
| 의무내용           |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<br>- 위험기계, 위험물질 사용 및 굴착·발파 등 위험작업 시 안전 및 보건조치<br>- 위험장소에서의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조치   |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<b>안전·보건 확보 의무</b><br>-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,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<br>- 관계 법령에 따른 기관의 시정명령 사항 이행<br>-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|
| 처벌수준<br>(양벌규정) | [개인] <b>사망</b> ▶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<br><b>조치위반</b> ▶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<br>[법인] <b>사망</b> ▶ 10억원 이하 벌금<br><b>조치위반</b> ▶ 5천만원 이하 벌금 | [개인] <b>사망</b> ▶ 1년 이상 징역 or 10억원 이하 벌금(병과가능)<br><b>부상 질병</b> ▶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<br>[법인] <b>사망</b> ▶ 50억원 이하 벌금<br><b>부상 질병</b> ▶ 10억원 이하 벌금   |

## 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대산업재해 사례



- 00청 산림 벌목작업 중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**1명 사망**
- 00시 교실 밖 CCTV 점검 중 떨어져 **1명 사망**
- 00시 정수장 지하실 저류조 청소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으로 **1명 사망, 2명 부상**
- 00구 우천으로 쓰러진 나무 제거작업 중 작업용 톱이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으로 **1명 사망**



## Ⅲ.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경영책임자의 역할

# 1.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



## 법제정 목적

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 
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 
중대재해를 예방 하는 것

## 처벌규정의 목적

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

-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 
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,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

↑ 22. 1.27 50인(50억 건설현장) 이상 사업장 중처법 적용

↑ 24. 1.27 50인(50억 건설현장)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



## 중대재해처벌법은

기업 DNA를 바꾸어

안전이 경영체계에 내재화 되도록 하기 위한 법

⇒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 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여

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 
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라는  
메시지

### 3. 경영책임자의 역할



##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



- '사람은 실수하고, 기계는 고장난다'는 사실을 인정하고,  
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꾸준히 작동하도록  
경영책임자의 끊임없는 관심 필요
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핵심은

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

‘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’이란

-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
-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, 제거·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·이행하며,
-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

# 사고위험요인 감소대책 마련 절차

## ○ 사고 위험요인별 제거·대체 및 통제



### \*NIOSH:

미국 국립직업안전위생 연구소,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

- 미국 국립 직업안전위생 연구소는 작업 그리고 업무 관련부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권장하는 미국연방기관

\*PPE: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



###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의 실시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)

- 1** **본질적 (근원적)대책** — 위험한 작업의 폐지·변경, 유해위험물질 또는 유해위험요인이 보다 적은 재료로의 대체,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
- 2** **공학적 대책** — 인터록, 안전장치, 방호문, 국소배기장치 등
- 3** **관리적 대책** — 매뉴얼 정비, 출입금지, 노출관리, 교육훈련 등
- 4** **개인보호구의 사용** — 상기①~③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거·감소할 수 없었던 위험성에 대해서만 실시

##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
사업장에서  
안전에 관한  
목표와 경영방침을  
명확히 하는 것



  
  
**안전의 출발점!**



기업의 규모, 업종은 다양한데  
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 
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.  
“근로자 과실”